

『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2월 1일

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
- 그 동안 버려졌던 빗물, 오수 및 하·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물의 재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7조제4항의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“10년간으로 한다.”를 “15년간으로 한다.”로 ,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“단축할 수 있다”를 “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”로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- 본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은

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질 개선을 장려하고,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,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

- 빗물이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 운용하는 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, 물의 재이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